

ERICA미래로 생활장학금 지급 내규(안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 제16조(시행세칙 및 내규)에 의하여 ERICA미래로 생활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ERICA미래로 생활장학금에 관하여 본교의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.

제2장 장학 기준 및 원칙

제3조(장학 대상) ERICA미래로 생활장학 대상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- ① ERICA미래로 생활장학 신청자
-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계곤란자
 1.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2. 긴급가계곤란자(학부모 실·폐업자)
 3. 일반휴학 3회 소진자 등 단과대학장 또는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장이 추천하는 자

제4조(장학 대상자 선발) 해당학기 ERICA미래로 생활장학 대상자 중 신청자에 대하여 학생지원팀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선발한다.

제5조(장학 지원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최대 4년(건축학전공 5년, 약학과 6년)으로 한다. 매학기 ERICA미래로 생활장학 신청자의 직전학기 대비 성적(평점)을 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

제6조(장학 금액 및 자격유지 조건) 장학금 금액 및 장학 유지 조건은 [표 1] ERICA미래로 생활장학금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예산 총액 초과시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, 차상위계층 2순위, 긴급가계곤란자 3순위 등으로 인원과 지급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.

제3장 장학금 지급 및 수혜 제한

제7조(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)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매월 학생지원팀에서 생활비(계좌이체)로 지급한다.

제8조(수혜자격 제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장학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타생활비지원 장학 수혜자
- ② 징계 중인 자 또는 휴학생
- ③ 그 외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

제9조(장학 취소) 기 선발 처리된 장학생이 제8조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혜 장학을 중단 또는 취소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3월부터 시행하며, [표 1] ERICA미래로 생활장학금에 적용한다.

[표 1] ERICA미래로 생활장학금

구분	지원 대상	장학 유지 조건	장학 금액
기초생활수급자	신·편입생	직전학기 평점 3.0이상 및 상승	500,000원/월
	재학생	직전학기 평점 2.0이상 및 상승	
차상위계층	신·편입생	직전학기 평점 3.0이상 및 상승	400,000원/월
	재학생	직전학기 평점 2.0이상 및 상승	
· 긴급가계곤란자 (학부모 실·폐업자) · 일반휴학 3회 소진자 등 단과대학장 또는 한양행 복드림상담센터장이 추천하는 자	재학생	직전학기 대비 성적 상승 시 장학 혜택 유지, 최대 1년	500,000원/월
<p><공통 자격 유지 조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 첫학기 평점 무관 - 직전학기 대비 성적(평점) 하락으로 장학에서 탈락한 경우, 탈락 직전학기 평점 이상 취득 시 재신청 가능 - 3.5이상의 평점을 유지하는 경우 수혜 자격 유지 			